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검 토 보 고

〈수사외압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요구〉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611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1. 수사요구안의 취지 및 특별검사의 제도 유형	5
2. 관계 기관의 의견	9
3.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	11
가. 수사대상	11
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 및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14
다. 조직 규모	18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19
※ 참고자료	21
1. 개별특검법 유형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연혁	21
2. 역대 특별검사 관련 법률 주요내용 비교	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22인
2. 제안연월일 : 2024. 10. 8.
3. 회부연월일 : 2024. 10. 10.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2.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3. 제22대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4.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장 지시로 백해룡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의 마약 수사전담팀이 마약 수사를 마무리하던 중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사 외압은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차 무혐의 또는 수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손상되었음.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을 당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언급한 이후 윤석열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고, 불과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하며 주가조작 정황이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여타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초지일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BP패밀리의 존재여부’, ‘김건희-이종호와 40차례 연락’ 등 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김건희에 대해 출장 조사만을 실시한 채 명확한 수사 없이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음.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음.

국회에서는 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안전심의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 또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의 일부가 합당한 사유 없이 단순 불출석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였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임.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사건들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Ⅲ. 검토의견

1. 수사요구안의 취지 및 특별검사 제도 유형

- 동 수사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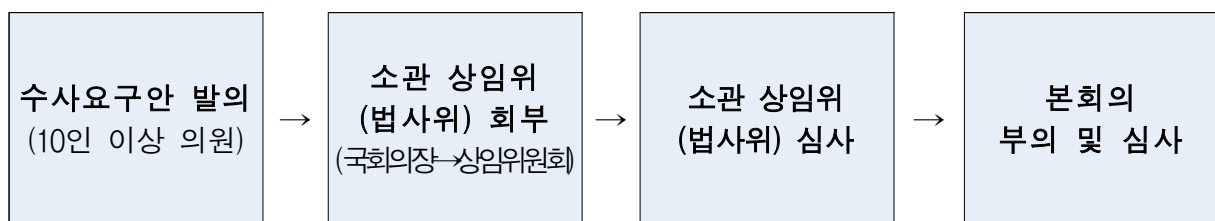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주가조작 정황이 의심됨에도 검찰에서 위 의혹사건들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한 상임위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조속히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¹⁾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결을 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됨.

- 수사요구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며,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동 수사요구안에서 정한 범위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확정되고,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특별검사 이하 조직의 규모, 수사기간, 재판기간 등이 적용됨.²⁾

[표 1] 수사요구안의 심사 절차



-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 수사요구안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p. 9.) 참조

국회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그 수사대상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³⁾

-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739호)」(이하 ‘개별특검법안’)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는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임명 절차, 조직 규모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사요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상설특검법 유형)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개별특검법 유형)이 각각 제시될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

3)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바196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인지 또는 두 개의 유형을 병존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관계 기관의 의견

○ 동 수사요구안에 대해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1호) 마약수사 외압 및 조병노 구명로비 사건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소추 업무를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써, 그 본질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본건 의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및 본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후, 경찰,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의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야당도 그동안 경찰, 공수처 수사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 -따라서,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상설특검의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됨. -또한 중복 수사로 인한 인적·물적 비용의 낭비와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2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	-먼저, 본건 수사요구안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문자메시지가 '주가조작'과 관련된 메시지가 맞는지, 삼부토건의 주가가 조작되었는지, 이종호 등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조작으로 단정하고, 이러한 주가조작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교활동 등을 통해 가담하였는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대·재생산에 특검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를 초래할 염려가 있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본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수처는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관련사건 수사 중인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도입할 경우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음. -한편, 본건은 구체적인 시기·주체 등 없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만 규정된 관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법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수사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수사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3호)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본건 수사대상은 제22대 국회에서 진행되었거나 향후 진행될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관련된 국회증언감정법위반사건* 일체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임. *청문회 등에서의 증인불출석, 증언거절, 서류제출거절, 선서거부, 증언거부, 감정거부, 증인출석방해(동법 제12조), 국회모욕, 동행명령거부(동법 제13조), 위증(동법 제14조) 등 -이와 같이 그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수사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문제점이 있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대응하여 증인출석, 자료제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검 실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결과 초래 -본건 수사요구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실시하여, 국회가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들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여지 있음. -그러나, 본건 수사요구안에 따라 상설특검을 실시할 경우 우리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심각히 훼손되는 측면이 있음. -즉, 현행 사법시스템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고발인이 수사·재판을 담당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언·감정인 등이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회를 고발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언·감정인 등이 제12조(불출석등)·제13조(국회모욕등) 또는 제14조제1항(위증등)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결국 본건 수사요구안은 고발권자인 국회가 상설특검을 실시한 후 법률에 규정된 수사기관을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 및 수사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여 그 특검으로 하여금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활동

- 수사 외압·구명 로비 및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상설특검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바, ① 수사대상, ②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 및 특별검사 임명 절차, ③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직 규모, ④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해서 개별특검법안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가. 수사대상

- 수사요구안은 ①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 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②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③ 제22대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④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별특검법안은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외에 뇌물성 협찬,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구명로비, 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인허가 과정 개입, 부정선거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수사요구안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수사요구안 (김용민의원 등 22인)	개별특검법안 (김용민의원 등 169인)
①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②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③ 제22대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④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②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③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④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직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⑦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하여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⑧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요구안 (김용민의원 등 22인)	개별특검법안 (김용민의원 등 169인)
	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⑪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⑫ ①-⑪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⑬ ①-⑪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⑭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 및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 상설특검법에서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상 당연직 3인), 제1교섭단체⁴⁾에서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인(이상 위촉직 4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특검후보추천위’⁵⁾)가 15년 이상 법조경력 인정되는 변호사 중 2인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함.

참고로,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특별검사 후보추천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95)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 및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2024. 10. 8.)되어 소위에서 가결(2024. 10. 28.)되었음.

개별특검법안에 따르면, 「국회법」 제33조⁶⁾에 따른 교섭단체 중

-
- 4)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로서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를 의미함.
 - 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무부 차관 / 2. 법원행정처 차장 / 3. 대한변호사협회장
 -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 6)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7)에 15년 이상(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 합산)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각각 1명씩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함.

[표 3] 수사요구안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시 후보자 추천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김용민의원 등 22인)	개별특검법안 (김용민의원 등 169인)
○ (추천권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변호사 중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는 7인의 위원(당연직 3인, 위촉직 4인)으로 구성 - (당연직)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 (위촉직) 제1교섭단체 2인, 그 외 교섭단체 2인	○ (추천권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각 1인씩 총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

-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①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②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며, ③ 특검후보추천위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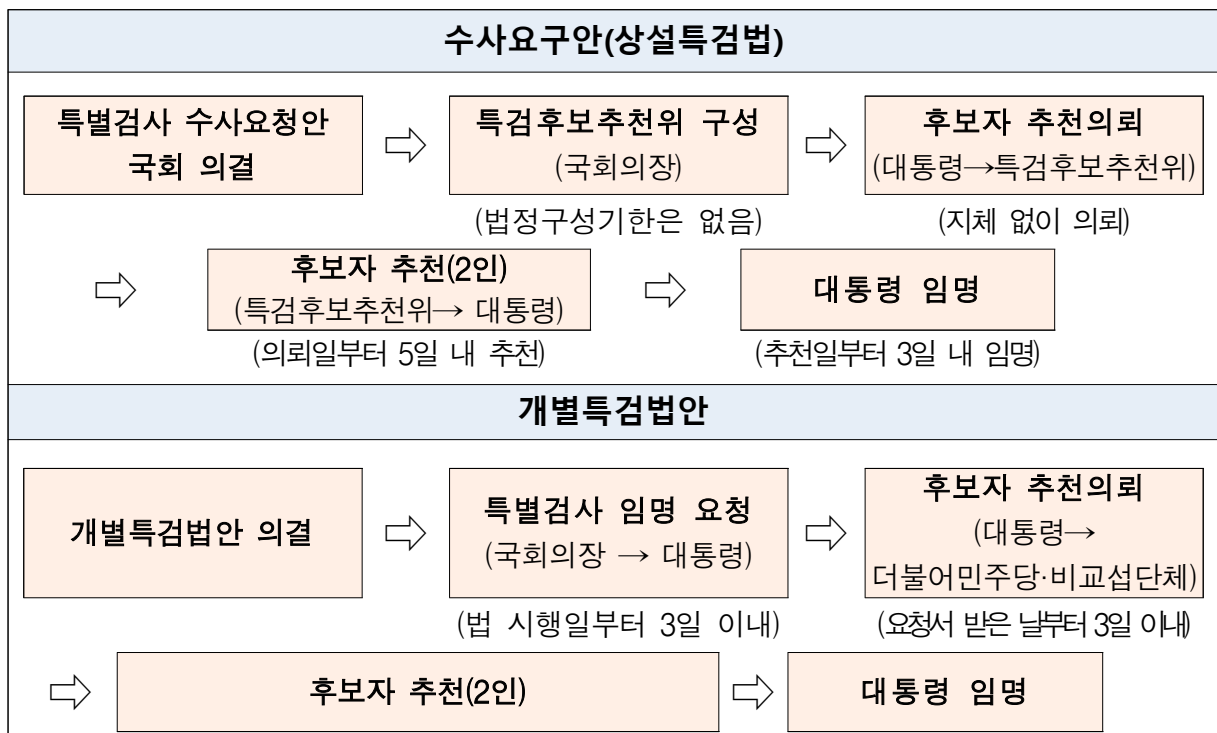
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7)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

개별특검법안에 따르면, ①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고, ② 대통령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며, ③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각 1인씩 총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④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며,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봄.

[표 4]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 1인씩 선정 → 대통령) (의뢰일부터 5일 내 추천)	(추천일부터 3일 내 임명)
--	-----------------

- 참고로,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총 13건)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4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5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⁸⁾, 그 밖에 2012년 9월 특검법⁹⁾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016년 11월 특검법¹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5월 특검법¹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8)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 4. 26. 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9)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민주통합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직 규모

-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인 인정되는 변호사 중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5인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개별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인 인정되는 변호사 중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30명 이내의 파견검사와 6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음.

[표 5] 수사요구안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직규모

구 분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김용민의원 등 22인)	개별특검법안 (김용민의원 등 169인)
특별검사보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2인 (후보자는 4인까지 추천 가능)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4인 (후보자는 8인까지 추천가능)
특별수사관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60인 이내 임명
파견 인력지원	① 5인 이내 파견검사 ② 30인 이내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① 30인 이내 파견검사 ② 60인 이내 파견공무원 (파견검사 제외, 10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수사기간은 60일 이내이며,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그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개별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은 20일 이내이고,¹²⁾ 수사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하되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재판기간의 경우 수사요구안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그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12)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명시

[표 6]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구 분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 (김용민의원 등 22인)	개별특검법안 (김용민의원 등 169인)
수사기간	① 준비기간: 20일(수사금지 명시) ② 원칙: 60일 ③ 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1회)	① 준비기간: 20일(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명시)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④ 재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재판기간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특검법 유형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웃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1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특검법	검사등불법자 금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사저부 지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임명	절차	①국회의장의 임명 요청(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좌동)	(좌동)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 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의뢰 -2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 의뢰 -2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자추천의뢰 -3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 자 추천 의뢰 -3일 이내 ③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 자 추 천 의뢰 -지체없이 ③특검후보추천위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 자 추 천 의뢰 -3일 이내 ③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 자 추 천 의뢰 -3일 이내 ③자유한국당비른 미래당·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 후보 자 추 천 의뢰 -3일 이내 ③교섭단체 합 의로 법원행정 처장 및 대한변 협회장이 각각 2 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자격	15년 이상 법 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10년 이상 법 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5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월 이내에 공무원이었던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이 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 진자, 가진적 있는자 ④공무원결격자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이 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결격자	(좌동)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졌던 자 ④공무원결격자	①국민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 무원이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에 당적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예비) 후보자 등록 한 사람 ⑥공무원결격자	(좌동) +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좌동)	(좌동)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웃로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특검법	검사등불법자 금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사저부 지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예람 중사 특검법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좌동)	①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①7년 이상 법조 경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특별 수사관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권 한	① 수사협조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 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응시)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 명령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 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명령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 명령권	(좌동)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 명령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③참고인동행 명령권(위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좌동)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 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관장과 합의 의무)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요청권)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②원칙: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좌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 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 과 국회에 서면 보고	(좌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좌동)	(좌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좌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	(좌동)	(좌동)	

구분	조폐공사파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특검법	검사등불법자 금특검법	D-DOS 특검법	내곡동사저부 지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에람 중사 특검법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관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관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벌칙	① 직무수행 방해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직무수행 방해 : 5년이하 징역	①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좌동)	(좌동)
	② 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 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위헌)				② 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 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 천 만 원 이 하 벌금	(좌동)	(좌동)
	③ 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 수사내용 공표 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③ 수사내용 공표 누설: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좌동)	(좌동)
	④ 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득 정보 소각·만 보고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